##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0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조정훈·성일종·서지영

김대식 · 김장겸 · 김소희

인요한 · 김예지 · 김민전

김용태 · 김미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u>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u>
	위하여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
	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
	시하여야 한다.